

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

제정	2007. 8. 13	의회규칙 제14호
일부개정	2012. 3. 8	의회규칙 제25호
일부개정	2015. 9. 14	의회규칙 제37호(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일부개정	2018. 4. 25	의회규칙 제43호(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, 의정 및 시 행정 전반,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인원)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 3. 8>

제4조(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3. 8>

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.

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단체의 지원 심의)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 <개정 2018. 4. 25>

제6조(심의내용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 9. 14>

1.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

2.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
4. 연구 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연구단체의 지원)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 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% 이내로 한다.

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전년도 연구 활동 실적, 연구계획서의 충실도,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 활동비 지급 등) 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.

②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
③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9. 14>

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.

제9조(연구계획의 변경)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) 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1회계 연도 단위로 한다.

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“의원연구사례집”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10조의2(공동참여)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 3. 8]

제11조(규정 등 제정) 의회는 이 규칙 외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3. 8 의회규칙 제2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9. 14 의회규칙 제37호,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4. 25 의회규칙 제43호,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- 1. 단 체 명 :
- 2. 설립목적 :
- 3. 구성인원 : 명

성 명	소속상임위원회	서 명	비 고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의원 (서명 또는 인)

광명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연구단체 의원 변동 보고서

「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변경을 보고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표자	의원	
변동의원	당초	의원
	변경	의원
변동일자		
변동사유		
기타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의원 (서명 또는 인)

광명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연구 활동 계획서

「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대표자		의원	
연구내용		주제	
		목적	
연구방법 및 세부활동 계획		「별첨」	
연구 활동비	총액		
	산출내역	「구체적으로 기술」	
기타			

년 월 일

제출인 대표자 : 의원 (서명 또는 인)

광명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

「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」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.

연구단체명	
대표자	의원
연구주제	
심의·의결 내용	
기타	

년 월 일

광명시의회의장

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<개정 2018. 4. 25>

연구주제 변경신청서

「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 활동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표자	(인)	
연구주제 변경내용	당초	
	변경	
변동사유		

년 월 일

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